

#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[노부모부양 특별공급]

- ※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2. 10. 07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- ※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'전체포함' 및 '상세' 로 발급
- ※ 정당한 당첨자(적격여부)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

## ■ 당첨자(예비당첨자 포함) 서류 제출 일정 안내

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간		제출 장소
당첨자	'22. 10. 30(일) ~ 11. 02(수) 오전 10시 ~ 오후 5시	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2-8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견본주택 T.1533-0525
예비당첨자		

## ■ 구비서류

구분	발급대상	제출서류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서류	청약자	신분증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
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· '본인'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
		주민등록표등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전체포함' 발급
		주민등록표초본	·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전체포함' 발급
		가족관계증명서	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추가서류 (해당자)	청약자	혼인관계증명서	·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	복무확인서	· 해당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※ 군 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	가족관계증명서	·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'상세'로 발급
	직계존속	주민등록표초본	·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전체포함'로 발급)
		가족관계증명서	·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	출입국사실증명원	· 국토교통부 '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'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
	직계비속	주민등록표초본	·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전체포함'로 발급)
		혼인관계증명서	· 만 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,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	출입국사실증명원	· 국토교통부 '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'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- 만30세 미만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만30세 이상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제3자 대리인 신청인	청약자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· '본인'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
		위임장	· 청약자(본인)의 인감도장 날인 (견본주택에 비치)
대리인	신분증, 도장(서명)	·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)	
		·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·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· '소형·저가주택 등'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·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해당주택	·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

## ■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증빙서류

구분	발급대상	제출서류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단신부임	청약자	해외체류관련 증빙 서류	·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: 파견 및 출장명령서 ·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· 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아래사항 반드시 제출)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
		배우자 포함 세대원	· 배우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(청약자 및 배우자 등)에 등재된 세대원 및 청약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'Y' 설정하여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, 기록대조일(출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.10.07)
	청약자 및 세대원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·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-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